

인천지방법원 2024. 11. 27 선고 2024가단3182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0. 16.

판 결 선 고 2024. 11. 27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-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2 기재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.

판사 윤영석

별지